

1. 개정 이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자체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습채불사업주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외(안 제9조제4항제3호)
- 나. 보조금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자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계좌정보 포함 의무화(안 제12조제4항, 제5항)
- 다.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14조제3항)
- 라. 보조사업 관련 물품·용역 구매계약의 경우에도 공사계약과 같이 기준금액이 ‘추정가격’임을 명확화 (안 제17조제3항)
- 마. 민간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하는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기준금액이 ‘추정가격’임을 명시 (안 제18조제1항)
- 바.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공사의 요건 중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의 판단기준 명확화 (안 제18조제2항)
- 사. 지자체장이 자체 노력으로 예산 절감 시 미반환 및 유사 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한 소액기준을 상향 (안 제20조)
- 아. 재이월이 가능한 경우를 ‘입찰공고 또는 지출원인행위 여부’를 기준

- 으로 정비하여 무분별한 재이월 방지 (안 제21조, 제21조의2)
- 자.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창구를 보조금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각 중앙관서의 효율적 관리 도모 (안 제22조제4항)
- 차. 2회계연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잔액 미반납 보조사업자에 대해 해당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추가 교부 금지 (안 제23조제3항)
- 카. 2회계연도 이상 미정산 및 미반납 보조사업을 중앙관서의 주요 수행 점검 대상으로 추가 (안 제28조제1항제4호)
- 타. 통합관리지침 상 반환이자에 관한 일반 조항 신설 (안 제29조3)
- 파. 부정수급 적발 후 사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조치 사항으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명시 (안 제34조의2제3항)
- 하. 그 밖의 ‘중요재산’의 범위에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도 명시 (안 제35조제3항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공고안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총괄 부서장”를 “총괄부서의 장”로, “담당 부서장”를 “담당부서의 장”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조금법 제12조”를 “「보조금법」 제12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3조제1항”을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제3항제2호”를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예탁관리기관”을 “예탁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조금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별표3 내지 별표5”를 “별표 3 내지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보조사업 선정 (‘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

련)”을 “보조사업 선정 (‘「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적격심사를 거쳐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법」 제15조의2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평가결과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를 “평가결과는 「보조금법」 제15조의2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부서”를 “주관부서”로, “제①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을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능력, 사업능력”을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중 “제10조의2에 제1항”을 “제1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

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조정 할”을 “조정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수행·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④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확인·점검할 수 있다”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주관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 주관부서”를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소”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보조금”을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보조금법 제40조”를 “「보조금법」 제4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②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동 지침 및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보조금법 제26조의2”를 “「보조금법」 제26조의2”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을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보조금 사용방법)”을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가 보조금시스템에 중복 또는 누락된 상태로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간접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3 중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를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천만원”을 “추정가격이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

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금액 기준에 관하여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계약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⑨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7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추정가격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를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공사 및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로 한다.

제20조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을 “재해복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주관부서”를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이월 승인 시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조사업비의 재이월) ① 제21조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2. 제21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이월의 경우 제21조제3항 내지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을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내에”를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제5항과 제7항”을 “제1항과 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제1호 중 “3개월”을 “3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개월”을 “6개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2개월”을 “12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연 기간”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를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조금법」 제27조2항”을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모든 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세부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보조금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으로 한다.

4.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경우

제29조의2제1항 중 “별지 제8호”를 “별지 제9호”로,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승인할 수 있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하는 보조금관리정보 중 중앙관서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권한을 갖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한다

제4장에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보조금에 대한 반환이자 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을 때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보조금의 교부시점으로부터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되 해당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이자의 산정이 곤

란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생이자를 계산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 보조금 관리 계좌의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무이자 약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⑤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정산일로부터 보조금 반환기한까지의 기간은 발생이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에 따라 발생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관한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5장의 제목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을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의2 와”를 “제33조의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법」 제33조제3항”을 “「보조금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와”를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주관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으로서, 본 지침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시스템 등록 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와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의뢰기관”을 “의뢰기관 및 담당부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주관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

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및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내·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⑩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후속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⑪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으로서, 동 지침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4조의 제목 “(부정수급 점검)”을 “(부정수급 점검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말까지 다음”을 “다음”으로, “점검 결과를”을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

제34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기획예산처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 교부결정”을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가 점검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기획예산처의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의2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및 「보조금법」 제15조의2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의 제목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을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4호 중 “장비”를 “장비, 물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제3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2019년 6월 1일”을 “2026년 6월 1일”로 한다.

별표 3의 하 단계의 특징란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상 자 원”을 “상”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을 “산 업 통 상 부 장 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중앙관서의 장”을 “산 업 통 상 부 장 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3조제2항 개정규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26년 중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부정수급 의심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 사항	1.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법인명), 주소, 은행명, 예금주명,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5년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성명(법인명), 주소, 은행명, 예금주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계좌번호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5년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조금 사업 관리	5년
금융결제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목적 달성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처리 근거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5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이월명세서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 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a)	지자체 부담금 (b)		자기부담금 (c)	합계 (d)=(a)+(b)+(c)	보조금비율 (e)=(a)÷(d)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전기 이월분을 포함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주4)}

(단위: 원)

전기이월분			당기분 집행액 (i)	집행액계 (j)=(f)+(i)	집행 잔액 (k)=(d)-(j)
전기 집행액 (f)	전기 집행잔액 (g)	전기 이월액 (h)			
전년도 집행액	전년도 집행잔액	전기 집행잔액(g)의 차기이월금액	당해연도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i) + 전기분 집행액(f)	보조사업비 총액(d) - 집행액계(j)

4. 차년도 이월승인 신청 현황

이월 신청일	이월 승인일	지출원인 행위일*	차기이월분				합계 (p)=(l)+(m)+(n)+(o)	반납대상액 (q)
			보조금 (l)	시도 (m)	시군구 (n)	자기부담금 (o)		
보조사업자 이월신청일	중앙문서 승인일	지출원인 행위일시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차기이월분 합계	집행잔액(k) - 차기이월분합계(p)

* 입찰공고 또는 지출원인행위의 명세 및 일시를 입력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보조비목	차기이월분				합 계 ($\textcircled{p}=\textcircled{m}+\textcircled{b}+\textcircled{n}+\textcircled{o}$)
	보조금($\textcircled{1}$)	시도($\textcircled{m}$)	시군구($\textcircled{n}$)	자기부담금($\textcircled{o}$)	
인건비(110)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운영비(210)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여비(220)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업무추진비(240)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합계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u> <u>통합관리지침</u>	<u>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u>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제3조(정의) ① ----- ----- --.
1. ‘주관부서의 장’이란 <u>산업통</u> <u>상자원부</u> 의 보조사업 예산 편 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 <u>총괄 부서</u> <u>장</u> ’라 한다)과 실제 보조사업 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 <u>담당 부서</u> <u>장</u> ’라 한다)을 말한다	1. ----- <u>산업통상</u> <u>부</u> ----- ----- ----- ‘ <u>총괄부서의</u> <u>장</u> ’----- ----- ‘ <u>담당부서의</u> <u>장</u>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u>보조금법 제12</u> <u>조</u> 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 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 위를 말한다.	4. ----- ----- 「 <u>보조금법</u> 」 <u>제12조</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부정수급’이란 「 <u>보조금법</u> 」	6. -----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7. 8. (생략)

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
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
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
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
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제
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
용카드를 말한다.

10. ~ 12. (생략)

13. ‘예탁관리기관’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에 따라 보
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
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
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
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
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
다.

14.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
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7. 8. (현행과 같음)

9. -----

----- 직불카드로서 「보조
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제3항
제2호-----
-----.

10. ~ 12. (현행과 같음)

13. ‘예탁기관’이란-----

-----.

14. ----- 기획예산처장
관 -----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생략)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 정보는 별표3 내지 별표5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u>기획재정부장관</u>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장 <u>보조사업 선정</u> (‘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6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u>적격심사를 거쳐야</u> 한다.	-----. ② ----- ----- 「보조금법」 제2조----- -----.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별표 3 내지 별표 5</u>---- ---. ③ ----- ----- ----- <u>기획예산처장관</u>-----. ④ (현행과 같음) 제2장 <u>보조사업 선정</u> (‘「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6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 ----- ----- ----- ----- -- <u>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여야</u> ---.
--	--

② 적격성 심사의 심사대상,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최종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및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6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법」 제15조의2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7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

----- 평가결과
는 「보조금법」 제15조의2의 보

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①항의 연장평가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9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0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

---- 제1항-----

--.

제3장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9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

----- 능
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
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
의 이력, 사업능력-----.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의2제1항-----

<신 설>

제10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생략)

② 주관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6. (생략)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신 설>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채불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제10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산업통상부 -----
-----.

1. ~ 5. (현행과 같음)

6. 사업수행·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 조정할 -----.

④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u>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u>
제10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제10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u>확인·점검</u>할 수 있다.	① ----- ----- ----- ----- <u>확인·</u> <u>점검</u>하여야 한다.
② <u>기획재정부장관, 주관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u>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u>확인·점검</u>할 수 있다.	② <u>주관부서</u>----- -----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u>기획재정부 장관과</u>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 ----- ----- ---- <u>기획예산처장관</u>-----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제10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u>기획재정부장관, 주관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u>	① <u>주관부서</u>----- -----

기획예산처 장관 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 다만,

공모외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

에 대한 심의 등 주관부서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 라. (생략)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신설>

-----.

1. -----

-----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

2.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

②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② (생략)

<신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 ①·② (생략)

③ 주관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

수행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동 지침 및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보조사업자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하여야 한다.

⑤ -----

--- 제1항 내지 제4항-----
--.

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
조금법」 제26조의2-----

-----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생략)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4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후단 신설>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

장관-----

---- 아니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4조(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① -----

----.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하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

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5조의2(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예탁기관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을 보조사업 재원별 비율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16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생략)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8호

지 아니하다. 다만, 이 경우 주
관부서의 장은 보조금 사용 내
역의 증빙자료가 보조금시스템
에 중복 또는 누락된 상태로 제
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점
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 미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현
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작 제>

제15조의2(보조사업비카드 부수
수익의 배분 등) -----

----- . -----
----- 기획
예산처장관-----
----- .

제16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
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16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따른다.

제17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관부서의

자

제16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

--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17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 4. (생략)

<신설>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③ -----

-----.

1. 추정가격이 2천만원-----

--

2. ~ 4. (현행과 같음)

④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5항-----

-----.

⑦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금액 기준에 관하여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계

<신 설>

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계약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적 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제17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7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

제18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 설공사) 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 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 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	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 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 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 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 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 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 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 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 등으로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8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 설공사) ① ----- ----- ----- ----- ----- 한다 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
--	--

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 3. (생략)

③ · ④ (생략)

제20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1조의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추정가격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

1. -----
-----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공사 및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예산절감액 등) -----

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1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생략)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 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신설>

3.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500만 원 -----.

제21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 -----

-----.

1. (현행과 같음)

2. ----- 재해 복구 -----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주관부서의 장

<신 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생략)

<신 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이월 승인 시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1조의2(보조사업비의 재이월)

① 제21조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2. 제21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이월의 경우 제21조제3항 내지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

---- 기획예산처장관-----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3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생략)

-----.

④ -----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⑧ 제1항과 제5항-----

-----.

제23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

② -----

-----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
---.

1. 3개월 이상 -----

0%이내 보조금 삭감	-----
2. <u>6개월</u> 지연 제출하는 경우 2	2. <u>6개월 이상</u> -----
0%이내 보조금 삭감	-----
3. <u>12개월</u> 지연 제출하는 경우 5	3. <u>12개월 이상</u> -----
0%이내 보조금 삭감	-----
④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 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 침」에서 정한다.	⑤ ----- ----- ----- 기획예산처의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 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 서 작성 지침」에서 정하는 바 를 따른다.
⑤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 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⑥ ----- 제4항----- -----.
제24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생략)	제24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 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 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 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주관부서의 장이	② ----- ----- ----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 금 통합관리지침」 ----- ----- -----. -----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 -----

달리 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25조(검증기관의 책임) 주관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6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제25조(검증기관의 책임) -----

--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
---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모든

제28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주
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
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
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
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
0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의 경
우

2. 3. (생략)

<신설>

4. 5. (생략)

② 주관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
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
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
여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의 장
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보고서
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

-----.

1. -----
----- 내역사업-----
--

2. 3. (현행과 같음)

4.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완료
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
지 않은 보조사업의 경우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

보조금시스템-----

-----.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⑤ 주관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9조의2(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관리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1. ~ 5.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① -----

----- 별지 제9호-----
----- 장-----

--.

② 주관부서의 장-----

----- 기획예산
처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신설>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하는 보조금관리정보 중 중앙관서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권한을 갖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한다

제29조의3(보조금에 대한 반환이자 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을 때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보조금의 교부시점으로부터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되 해당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이자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생이자를 계산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 보조금 관리계좌의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무이자 약정 또는 별도의 약정

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⑤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정산일로부터 보조금 반환 기한까지의 기간은 발생이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에 따라 발생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관한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30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
조금법」 제33조의2 와 「보조
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
표 3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
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
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3
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
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32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
정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사업자 또
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법」 제31조의2제1항와 제2항에
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30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 ① -----
-----제33조의2와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보조금법」 제33조제2항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
정 절차) ① -----

----- 「보조금
법」 제31조의2제1항 및 -----

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 ⑥ (생략)

제3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총괄부서-----

-----.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으로서, 본 지침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시스템 등록 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와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1. ~ 3. (생략)

<신설>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신설>

자체적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심의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및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내·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 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있으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

---- 의뢰기관 및 담당부서 ----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⑨ ----- 제8항 -----
----- 총괄부서 -----
-----.

⑩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후속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부정수급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⑪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으로서, 동 지침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4조(부정수급 점검 등) ① ----
----- 다음 -----
-----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 다만,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 략)

② (생 략)

제34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
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
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
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주
관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
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점
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
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
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6. 「보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삭 제>

② 기획예산처로부터 -----

-----.

③ -----
----- 부정수급심의
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신설>

<신설>

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

④ ----- 제2항-----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가 점검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부정수급심의회 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회원의 심의결과,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의2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및 「보조금법」 제15조의2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3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 ② (생략)

③ 주관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
재산의 경우 5년

④ · ⑤ (생략)

제3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생략)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 장비, 물품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별지

제4호 서식 _____

_____.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
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
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
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신설>

제39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③ -----

별지 제5호 서식 -----

-----.

제3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 별지 제6호 서식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관부서의 장은 포상금 지
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
기별로 심의한다.

제39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부
장관-----

----- 2026년
6월 1일 -----

야 한다.

-----.